상 주 시

시 보
www.sangju.go.kr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070호 2019. 10. 18.(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상 주 시

■ 고 시

○ 장동2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제2019-206호) ····· 3

■ 공 고

○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제2019-945호) ····· 4
○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제2019-946호) ····· 10
○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제2019-947호) ····· 15
○ 상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제2019-949호) ····· 19
○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9-952호) ···· 53
○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제2019-953호) ···· 60
○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제2019-955호) ····· 67
○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평생학습원 제2019-31호) ····· 75

■ 기 타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82

회람								

발 행: 상주시 편 집: 공보감사담당관

상 주 시

고 시

상주시 고시 제2019-206호

장동2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장동2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6일

상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장동2리 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 노후하여 붕괴 위험과 보행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돌담장을 정비하고, 향토자원 복원과 경관자원의 연계를 통한 경관특화마을 조성
3. **사 업 비:** 500백만원(국비 208, 시비 265, 자부담 27)
4. **주요 사업내용**
   - **지역경관개선:** 전통돌담장 정비, 서당마 복원, 장동마을샘 복원 등
   - **지역역량강화:** 교육, 국내선진지견학, 축제지원활성화, 마을기록물제작 등
5. **사업 시행자:** 상주시장(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6. **사업시행기간:** 2019년~2020년(2년간)

※ 기타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개발지원과에 비치된 기본계획서 열람가능 (상주시 개발지원과 지역개발팀 ☎ 054-537-7716)

상 주 시

공 고

상주시 공고 제2019-945호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조례상의 관람료를 주변 시설과 맞게 하향 조정하여 2020년 2월부터 유료관람으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8조의 별표 1의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관람료 조정

구 분	금 액		대 상
	개 인	단체, 상주시민 및 동주도시주민	
어 린 이	(당초)2,000원 (변경)1,000원	(당초)1,000원 (변경) 500원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및 군인	(당초)3,000원 (변경)1,000원	(당초)2,000원 (변경) 500원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 계급의 군인(전경, 의경, 경비교도 및 공익요원을 포함한다)
어 른	(당초)4,000원 (변경)2,000원	(당초)3,000원 (변경)1,000원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나. 제9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5.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시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054-532-6380 E-mail: ntc123@korea.kr, FAX: 054-532-6379, 시홈페이지:www.sangju.go.kr(입법예고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할 곳 : (우742-706)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관광진흥과)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의 상세내역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주 소:

○ 전 호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관람료(제8조 관련)

구 분	금 액		대 상
	개인	단체, 상주시민 및 동주도시주민	
어 린 이	1,000원	500원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및 군인	1,000원	500원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 계급의 군인(전경, 의경, 경비교도 및 공익요원을 포함한다)
어 른	2,000원	1,000원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비고)

1.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상주시민 및 동주도시주민 : 주민등록을 상주시 및 동주도시(전국동주도시교류 협의회 회원도시를 말한다)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9조(관람료의 면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
5. ~ 10. (생 략)	6. ~ 11. (현행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상 주 시

공 고

상주시 공고 제2019-946호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상 주 시 장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지내 미활용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운영방안과 입주기업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여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나.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3. 조례(안):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9년 10월 31일까지** 상주시장(참조 :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trustjeon@korea.kr

2) 주 소: 상주시 은척면 성주봉로91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우)37103

3) 팩스번호: 054-537-674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전화 : 054-537-56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이하 “한방산업단지”라 한다) 내 부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수탁자”란 한방산업단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한방산업”이란 약초, 한약재 등 한방 소재를 주원료로 하는 연구 및 제품 개발, 마케팅 등 한방의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따른 연계사업과 한방바이오 산업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방산업의 발전과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한방산업단지 운영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한방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경우
2.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한방산업단지 공장 및 연구시설, 그 지원시설에 입주한 기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한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한방산업단지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방건강강좌 및 한방관련교육 운영 지원
2. 한방제품 홍보비 지원
3. 약용식물의 연구·개발 지원
4. 산업(지원시설 포함)시설 등 입주 건축물의 구조·설비 지원
5. 한방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지원
6. 그 밖에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 주 시

공 고

상주시 공고 제2019-947호

「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상 주 시 장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상주시 함창읍에 건립중인 한복진흥원 운영·지원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진흥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이 수행할 사업내용에 관한 내용

나. 한복진흥원이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내용

다. 한복진흥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31일까지 상주시장(참조: 문화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dback123@korea.kr
2) 주 소: (우37211)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문화예술과
3) 팩 스: 054-537-7208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입법예고기간: 2019. 10. 11. ~ 2019. 10. 3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문화예술과(전화: 054-537-72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상주시 조례 제 호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복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한복산업 진흥의 중추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복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한복진흥원은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424에 둔다.

제3조(사업) 한복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복과 관련한 직업능력 개발 및 한복전수학교 운영
2. 전통생산 소재를 이용한 첨단소재의 개발 및 활용
3. 한복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4. 한복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교류·협력사업
5. 그 밖에 한복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복진흥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복진흥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0조의2 및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한복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 주 시

공 고

상주시 공고 제2019-949호

「상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세무조사 관련 사용하는 용어를 일치시키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와 현행 규칙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부분(세무조사 대상 선정 절차, 세무조사의 유예, 세무조사 방법 등)을 규칙에 명확히 명시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방식을 세분화(일반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부분세무조사 등) 하고, 세무조사 관련 용어를 전국 통일적으로 정비함(안 제2조)

나.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간 정기선정의 경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직접세무조사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1조)

(직접세무조사) 부동산 취득금액 1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비과세·감면액 1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상

다.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 특정하거나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부분세무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라. 세무조사 “면제”를 “유예”로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함(안 제14조)

마. 효율적인 세무조사 사무관리를 위하여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1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시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054-537-7292 E-mail : mycrone@korea.kr, FAX : 054-537-61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할 곳: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남성동) 상주시청 세정과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세정과(전화 054-537-72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상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상주시 규칙 제 호

상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 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도지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관련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시장은 납세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시장은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산의 취득유형·취득금액,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을 심의하는 경우

에는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③ 일반세무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은 후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3. 최근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최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자를 별도의 계획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 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자를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특정 거래 내용에 구체적인 위장·가공 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세무조사의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 「상주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업
4. 경상북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수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6.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제84조의4에서 규정한 면세점 기준을 넘는 법인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세무조사의 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같은 과세연도의 같은 세목에 대하여는 중복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중복세무조사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무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세무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시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7조(세무조사 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중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

할 수 없다. 다만,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 제77조 제2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세무조사의 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현황 조사. 다만,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조사. 다만, 거래의 일부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20조(세무조사의 장소)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세무조사의 시간)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세무조사 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자료의 최종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제12조에 따라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세무조사 사무관리

제26조(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및 조사공무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세무조사의 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

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준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위하여 미리 세무조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세무조사의 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세무조사의 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준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기간 중 세무조사 내용에 대하여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의 보고내용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0조(세무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면 세무조사의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세무조사 종결을 보고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종결을 보고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종결이 결정되면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1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2조(과세정보의 통보 및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와 관련된 과세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또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시장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세목별 세무조사 결과를 작성·관리한 대장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증으로 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에 따른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거나 세무조사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시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 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개시 전, 조사 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세무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세무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장소에 도착 즉시 조사 착수 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세무조사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세무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세무조사 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 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은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세무조사 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세무조사 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세무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세무조사 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고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종결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세무조사 적출내용 등 진행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되 고지 전에 조사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6) 납세의무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건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상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상 주 시 장 귀하

납 세 자 권 리 헌 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 주 시 장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연도별(5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상주시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서면 조사서 양식 다운로드: 상주시청 홈페이지→ 세정과 홈페이지→ 부서자료실(지방세 서면조사서)

※ 작성후 보낼 곳: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세정과 과표팀 우편번호: 37211

※ 문의사항 전화: (054) 537-7292

FAX: (054) 537-6129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비교식),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 지분 양도명세서

□ 각 사업연도별 유형고정자산 계정별원장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기계장비, 건설중인 자산, 비품 등]

※ 건물 신·증축 시: 공사원가명세서, 도급계약서, 지급수수료 계정, 세금과공과금 계정, 이자비용 계정

※ 토지 및 건물 매입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지급수수료 계정, 세금과공과금 계정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각 사업연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현황 작성요령

① 법인등록번호: 법인별 고유등록번호

② 법인구분: 해당사항란에 ○

③ 종류별구분: 해당사항란에 ○

④ 사업장명: 상주시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기재

⑤ 최초설치일: 해당 사업장의 최초 설치 년 월 일 기재

⑥ 사업자 등록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

⑦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⑧ 지점등기일: 지점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⑨ 사업장: 소유형태(자가, 임차) 해당란 ○표

토지면적 · 건물면적: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기재(공용포함)

인 원: 해당 사업장의 실근무 인원(파견인원 포함)

※ 작성시 참고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등

법 인 현 황

	법인명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대표자	법인설립 년 월 일	사업자등 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①법 인 등록번호	업태	업종	자본금	②법인 구분	③종류
본 점												국내 외국 외투	상장, 비상장, 중소기업, 일반, 공공, 비영리

상 주 시 내 사 업 장	④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⑤최초 설치일	⑥사업자 등록일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지점 등기일	⑨ 사 업 장			
								소유형태	토지면적	건물면적	근무인원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 ③ ~ ⑧ 항목 필히 기재 요망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① |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 산출 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92조의 세율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연도		사업장	경상북도 상주시	사업장명	

구분 월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 부 일 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상주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 연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 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및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 비과세 사유별 내역을 정확히 입력

② 정 당 세 액: 과세면적 × 250원

③ 각 동별 연면적은 소수점 이하 면적을 포함하여 합산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때는 소수점 이하는 버림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상주시 소재 사업장]

(단위: 원)

사업 장명	소재지	사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내역기입)	소계 (ⓑ)					

※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상주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정기급여, 상여금, 특별수당 등 포함)

②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해당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 월통상인원= 해당월의 상시고용 종업원수 + 해당월의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해당월의 일수

④ 산출세액

- 2015년도까지: ③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년도부터: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상주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원)

구분 \ 지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과세소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업원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 월별(지급연월) 기준으로 작성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신고기준 변경 : (종전) 종업원수 → (변경)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 상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영 치 사 유						
영 치 기 관						
영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영치 공무원	소속		직급		성 명	
입 회 인	소속		직		성 명	
서명날인 거부사유						

「상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3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위와 같이 압수·영치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 인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상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압수·영치 목록

일련번호	물건명	수 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 고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상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예 치 사 유					
예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입 회 인	소속		직		성 명

「상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4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위와 같이 예치합니다.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상 주 시 장 인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상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예 치 목 록

일련번호	물건명	수 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 고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상 주 시

공 고

상주시 공고 제2019-952호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 용어통일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규정 신설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안 제1조)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안 제5조)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

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4)(안 제10조)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과 용어 통일을 위해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 ⇒ 흡연실(안 제2조제4호, 제7조)

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31일까지 상주시장(참조 : 건강증진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007125@korea.kr

2) 주소 : 경북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3) 팩스 : (054) 537-6699

4) 시 홈페이지: www.sangju.go.kr(입법예고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건강증진과(전화 : (054) 537-52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 당 항 목	의견 내용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유로 (의견제시)

□ 의견 제출자

○ 주 소 :

○ 성 명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구역을”을 “장소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7조의 제목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를 “(금연구역 및 흡연실의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흡연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4”를 “제16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6조의4”를 “영 제16조의5”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1일 4시간 이상 근무)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배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2호라목 2)”를 “제2호다목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흡연실” ---------- 장소를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제9조제7항----------. 1. (현행과 같음)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생 략)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실의 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흡연실----------.
제9조(금연지도원)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금연지도원) ① ----------제16조의5----------.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연지도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5 및 영 제16조의4를 따른다.	③ ----------영 제16조의5----------.

<신 설>	제9조의2(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1일 4시간 이상 근무)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배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 영 별표 5 제2호라목 2)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3만원으로 한다.	제10조(과태료) ① ---------- ---------- 제2호다목4)----------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상 주 시

공 고

상주시 공고 제2019-953호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규정을 삭제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제1항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제1항제1호(안 제3조제1항제3호)

나.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과 용어 통일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개정(안 제2조 및 별표)

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규정(제5조 삭제)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31일까지 상주시장(참조 : 건강증진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007125@korea.kr

2) 주소 : 경북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3) 팩스 : (054) 537-6699

4) 시 홈페이지: www.sangju.go.kr(입법예고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건강증진과(전화 : (054) 537-52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 당 항 목	의견 내용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이유로 (의견제시)

□ 의견 제출자

○ 주 소 :

○ 성 명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상주시 규칙 제 호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 규격 등)”을 “(금연구역 및 흡연실 표지 규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후단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실 표지방법 등(제2조제1항 관련)

1.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방법

가.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나. 표지에는 금연구역의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경계범위 등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흡연실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가.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에 흡연실을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나. 표지에는 흡연이 가능한 장소임을 알리는 그림 또는 문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 금연구역에 개방된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실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라. 금연구역에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금연구역 및 흡연실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의 공통사항

가.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의 크기,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 규격 등) ①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실 표지 규격 등) ① ---------- ---------- ---------- ---------- 흡연실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금연지도원 위촉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 위촉 등) ①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삭 제>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5항에 따른 수당은 금연지도원 수당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때에는 1일당 수당지급기준의 최대 150퍼센트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 주 시

공 고

상주시 공고 제2019-955호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법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현행 법조항으로 변경하고 보건소 이용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개정사항 반영

- 제7조 → 제10조, 제10조 → 제13조,
  제14조 → 제25조, 제9조의2 → 제10조로 변경

나. 전염병 명칭 변경

- 전염병 → 감염병

다. 그 밖의 수가 항목 및 수수료 변경

- 치아홈 메우기 항목 삭제, 예방접종 수수료 변경

라. 제증명수수료 항목 신설

- 추가 항목: 진료기록사본(500원), 결핵검진확인서(500원)

마. 8조 2항 6호에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30일까지 상주시장(참조 : 건강증진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nji87@korea.kr

2) 주소 : 경북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3) 팩스 : (054) 537-6699

4) 시 홈페이지: www.sangju.go.kr(입법예고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건강증진과(전화 : (054) 537-52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 당 항 목	의견 내용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안		…. 이유로 (의견제시)

□ 의견 제출자

○ 주 소 :

○ 성 명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4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2”를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그 밖의 수가

(제6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1	유료예방접종 수수료	1회당	약품 구입가격 변동으로 “최근 구입가격”으로 함	

[별표 2]

증명서 발급 수수료

(제7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1	일반진단서	1통당	500원	
2	특별진단서	〃	2,000원	병사용
3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	5,000원	
4	건강진단서	〃	500원	
5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	500원	
6	사망진단서	〃	500원	
7	신체검사서	〃	500원	
8	진료기록사본	〃	500원	
9	결핵검진확인서	〃	500원	
10	각종 증명서 1통 초과 발급	〃	100원	
11	이미 발급한 증명서의 추가발급	〃	300원	
12	방사선 영상물복사(CD)	1CD	3,000원	의료급여자, 결핵환자무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진료비 등의 징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모두 합쳐서 “보건지소등”이라 한다)의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 등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진료비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조(진료비 등의 징수) ----------.
1.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1. 「지역보건법」 제10조----------
2.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지소	2. 「지역보건법」 제13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진료수가) ①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와 수수료의 진료수가(診療酬價)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제3조(진료수가) ① ----------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① 시장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단체나 개인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① ---------- ---------- ---------- ---------- ---------- ---------- --.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1. --- 감염병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 ---------- --------.
1. 전염병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1. 감염병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과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6. ---------- ---------- ---------- ---------- ---------- ---------- ---------- ----------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진료비 중 자기가 부담하여할 금액의 전부나 수수료를 감면 가. ~ 다. (생 략) 7.·8. (생 략)	- 제대군인,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는 ---------- 가. ~ 다. (현행과 같음) 7.·8. (현행과 같음)

상 주 시

공 고

상주시 평생학습원 공고 제2019-31호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평생교육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대상 조문을 개정

나. 평생교육 수요에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요건을 명확화 및 확대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포상 등의 관련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의 요건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삽입하는 등 조문을 명확화. (자치법규 정비대상)

나. 평생학습관 기능 중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연구 및 홍보”를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으로,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자 지원”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변경. (자치

법규 정비대상)

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 중 전부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함으로서 학습자 수요에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 기대. (신설)

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신설)

마.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규정을 마련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상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7159 경상북도 상주시 북상주로 24-42
- 전자우편 : ksm1223@korea.kr
- 팩스 : (054) 537-6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평생학습원(전화 054-537-5553, 팩스 054-537-6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상주시 및 상주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2.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운영자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평생교육 관련 학계 등 평생교육 전문가

제15조제1호 중 “제공”을 “수집·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개발·운영 및 보급”을 “개발·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6.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 중 전부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시장은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회원도시로서 협의회의 활동과 학습도시 간 연계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협의회에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1조(종전의 제19조) 중 “관련법령, 및”을 “관련법령을 따르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주시 평생교육 담당국장, 상주시 평생교육 담당과장, 상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학계,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2. 평생교육전문가 3.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상주시 및 상주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2.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운영자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평생교육 관련 학계 등 평생교육 전문가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5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5조(기능) ----------.
1. 평생학습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	1. ---------- 수집·제공
2.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연구 및 홍보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	3. ---------- 개발·운영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자 지원	6.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업의 공동추진) (생 략)	제17조(사업의 공동추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 중 전부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시장은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회원도시로서 협의회의 활동과 학습도시 간 연계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협의회에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포상)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관련법령, 및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21조(준용) ---------- ---------- ---------- 관련법령을 따르고 - ---------- ----.
제20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상 주 시

기 타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내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아래와 같이 직권 말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내역

대 지 위 치	건축물 내역	소 유 자	비 고
화서면 지산리 342-6	주1 1층 흙벽돌조 주택 47.3㎡ 주2 1층 시멘트블록조 축사 21.15㎡ 주3 1층 흙벽돌조 창고 28㎡	상주시 화서면 지산리 343 김**	부존재
	주 1층 흙벽돌조 주택 28㎡	상주시 화서면 지산리 338 박**	부존재
외남면 흔평리 486	주1 1층 흙벽돌조 주택 56.1㎡ 주2 1층 흙벽돌조 주택 35.7㎡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485 강**	부존재
냉림동 263-6	주 1층 토조 근린생활시설(식당) 39.67㎡	상주시 냉림1길 2-1(냉림동) 서**	부존재
무양동 134-22 외 1필지	주1 1층 조립식 임시사무실 72㎡ 주2 1층 조립식 임시사무실 64㎡	구미시 형곡동 254-7 김**	부존재

2. 행정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건축과(☎054-537-7604 건축행정팀)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